#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콘텐츠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쳤을 때 대처방법, 그리고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1
1.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 4
1.1. 아동·청소년 성범죄 ..... 4
1.1.1.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4
1.1.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 8
2.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9
2.1.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9
2.1.1.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 9
2.1.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15
2.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18
2.2.1. 보호관찰명령 ..... 18
2.2.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21
2.2.3. 사회봉사명령 ..... 22
2.2.4. 친권상실선고 ..... 24
2.2.5.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24
2.2.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28
3.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 33
3.1.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 33
3.1.1. 피해신고 ..... 33
3.1.2. 수사 및 재판 ..... 36
3.2.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40
3.2.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 40
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44
4.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44
4.1.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44
4.1.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46
4.2.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 46
4.2.1.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47
4.2.2. 성충동 약물치료 ..... 50

# 1.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 1.1. 아동·청소년 성범죄

### 1.1.1.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유사강간(類似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용어 검색>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구분 | 내용 |
|---|---|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br>• 예비, 음모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br>•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br>•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br>•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br>•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br>•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br>•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br>•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br>•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br>•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br>• 알선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br>•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 | |
|---|---|
| 아동·청소년에 대한<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범죄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br>•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br>•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br>•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br>•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br>•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br>•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br>•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br>•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br>•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br>•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br>•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br>•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br>•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br>•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 | |
|---|---|
| 아동·청소년에 대한<br>「형법」 상의 성범죄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br>•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br>•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br>•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br>•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br>•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br>•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br>•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br>•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br>• 강도강간죄와 그 미 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 아동·청소년에 대한<br>「아동복지법」 상의 성범죄 |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

**※ 이런 행위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모두 성폭력입니다.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 성평등가족부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

※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성희롱 피해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 성매매의 대상

##### 성매매 피해자란?

▪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2.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2.1.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2.1.1.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죄명 | 처벌내용 |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br>(「형법」 제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간<br>(「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br>(「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br>(「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br>(「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br>(「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br>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형법」 제25조 및 제300조) | |
| 상습범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형법」 제305조의2)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죄명 | 처벌내용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간음, 추행)〕<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3항)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br>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죄명 | 처벌내용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br>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 ·제1항(제작·수입 또는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br>·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3항(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4항(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7항(제1항의 상습범) :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제1항(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2항(강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4항(제1항 및 제2항의 상습범) : 제1항 및 제2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항(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br>·제2항(성매수에 아동·청소년 유인 또는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r>·제3항: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1항(강요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2항(제1항의 죄에 대가 수수, 요구, 약속) : 7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3항(성매수 상대방으로 유인, 권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항(알선영업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br>·제2항(영업으로 유인, 장소제공, 알선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r>·제3항(성매수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r>※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7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규정 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5조 및 제66조 등 각 처벌 규정 참조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죄명 | 처벌내용 |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br>(「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br>1억원 이하의 벌금 |

※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법률규정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5항).

| 죄명 | 처벌내용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 위의<br>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 유치원
- 학교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및 제11조).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법령용어 검색).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 2.1.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 구분 | 내용 | 처벌 |
|---|---|---|

| | | |
|---|---|---|
| 성<br>매수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성매도<br>알선자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br>①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br>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br>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br>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br>(미수범 처벌) |
| |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br>(미수범 처벌) |
|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장소<br>제공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 |
|---|---|---|
| 성매수 알선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자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2.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2.2.1. 보호관찰명령

#### 보호관찰처분

##### "보호관찰"이란?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이트, 보호관찰 절차도 >

### 보호관찰 대상자

-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

-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보호관찰 기간

-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년법」 제33조제2항·제3항).

| 구분 | 기간 |
|---|---|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년 |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유예기간<br>(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 가석방된 사람 | 가석방기간 |
| 임시퇴원한 사람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br>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단기 보호관찰기간 : 1년<br>장기 보호관찰기간 : 2년(1년의 범위에서 1번 연장가능) |
|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 보호관찰의 개시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보호관찰 담당자

-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경우에는 위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 위반 시 제재

▪ 경고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구인(拘引)

▹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조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긴급구인

▹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긴급”의 의미는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후단).

▪ 보호처분의 변경

▹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2.2.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 "수강명령"이란?

▪ “수강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참조).

####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형집행이 유예될 경우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법원은 수강명령을 내릴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본문).

▪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단서).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2.3. 사회봉사명령

#### 사회봉사명령

#### "사회봉사명령"이란?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

▪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사회봉사의 범위

▪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 집행기관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집행분야(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 농·어촌 지원(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 소외계층 지원(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 등)

▹ 복지시설 지원(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도 가능한가요?**

(질문)

저의 아이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의 처분명령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바로 처분명령을 해결하고 싶어요. 긴급재해복구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부탁하면 들어 주실까요?

(답변)

안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근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탁을 한다 해도 그런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참조>

### 2.2.4. 친권상실선고

#### 친권상실선고

##### 친권상실선고란?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 참조).

#####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 검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아동보호기관 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

▪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친권상실청구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친권상실선고 후 아동보호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단).

▪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단).

### 2.2.5.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법적 성격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이트, 보호관찰 >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선고

▪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 또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 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함)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

### 신상정보의 공개

▪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 포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공개기간

- 신상정보의 공개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구분 |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되지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또 이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그리고 이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제3항).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의 고지

▪ 신상정보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의 자에게 고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 유치원의 장
- 학교의 장
-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
-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의 장
-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고지방법

- 신상정보는 각 해당자에게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 포함)의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고지기간

- 고지명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 구분 | 기간 |
|---|---|
| 집행유예 선고 시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 아이가 있는데,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닌지 항상 불안해요.**

(질문)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으실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 |
|---|---|---|
| 휴대용 추적장치 |  |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 재택(在宅) 감독장치 |  |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 부착장치 |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 위치추적의 원리**




< 법무부 사이트, 전자감독제도 – 위치추적의 원리 >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 전자장치 부착기간

▪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내(일반범죄 부착기간 하한의 2배임)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구분 | 기간 |
|---|---|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 20년 이상 30년 이하 |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제외) | 6년 이상 20년 이하 |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 2년 이상 10년 이하 |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기 직전에 부착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 형 집행이 면제·가석방되는 날
-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준수사항

▪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내용의 준수

-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 정해짐)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위반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준수사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다음의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함)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에 따라 표기한다.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 3.1.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 3.1.1.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피해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아래 표 안의 신고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신고대상 범죄 | 포상금 |
|---|---|
|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또는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등<br>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br>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br>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br>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br>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 100만원 |
| 성 매수 행위, 유인·권유 행위 | 70만원 |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0만원 |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
| **경찰청** | ☎ 112 | 경찰 민원포털 |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유치원
- 학교, 위탁 교육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

###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 OK | NO |
|---|---|
| 안심시키고 이해하는 말 |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 |
| 우리는 네 편이야<br>너의 말을 믿는단다<br>네 잘못이 아니야<br>너를 도와줄게 |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br>너에게도 문제가 있어<br>조심했어야지<br>너 때문에 못 살겠다 |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이해받았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며,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부모의 공감 및 지지적 반응은 아동청소년이 충격적인 외상(Trauma)을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신체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손 씻기, 세수, 양치, 질 세척, 샤워는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
-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 속옷, 휴지 등)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성범죄 현장은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청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운영현황)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성평등가족부 정책가이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대응매뉴얼, 17~18p>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1.2. 수사 및 재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1.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상담 1388, 신고 112, 성폭력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 ↳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지정 및 상담
- ↳ 무료법률구조
- ↳ 의료비 지원 등

**2. 경찰수사**

피해자 진술조사 증거확보

- ↳ 가까운 해바라기를 통한 수사지원(피해자 진술조사, 영상진술 녹화, 증거채취 등)

**3. 검찰조사**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기소여부 판단

- ↳ 영상진술 녹화
- ↳ 신뢰관계인 동석

**4. 법원재판**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

- ↳ 법정동행
- ↳ 신변보호 위해 비공개 심리재판 청구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또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하 "피해아동·청소년"이라 함)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함. 이하 같음)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그 밖에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 과정 참여 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제5항).

▪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 법률적 조력(변호사 선임)

▪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본문).

※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단서).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함)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만약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 √ 사망
  - √ 외국 거주
  - √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 소재불명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공개 심리(審理)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이하“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3항).

▪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 사법경찰관리는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사법경찰관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비밀준수의 의무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해당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 3.2.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3.2.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 의료비 지원

▪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피해아동·청소년

-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보호자, 형제, 자매 제외)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신체적인 검사와 치료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을 마치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외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 정신과 진료는 상담 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 개인에 대한 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참조).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사이트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

▪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합니다.

|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
| 경찰청 | ☎ 112 | 경찰 민원포털 |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 성매매피해상담소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 |

### 의료비의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

### 상담치료의 진행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18조 참조).

### 청소년 지원시설에의 입소

▪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항).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간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

>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사이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4.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4.1.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제4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유치원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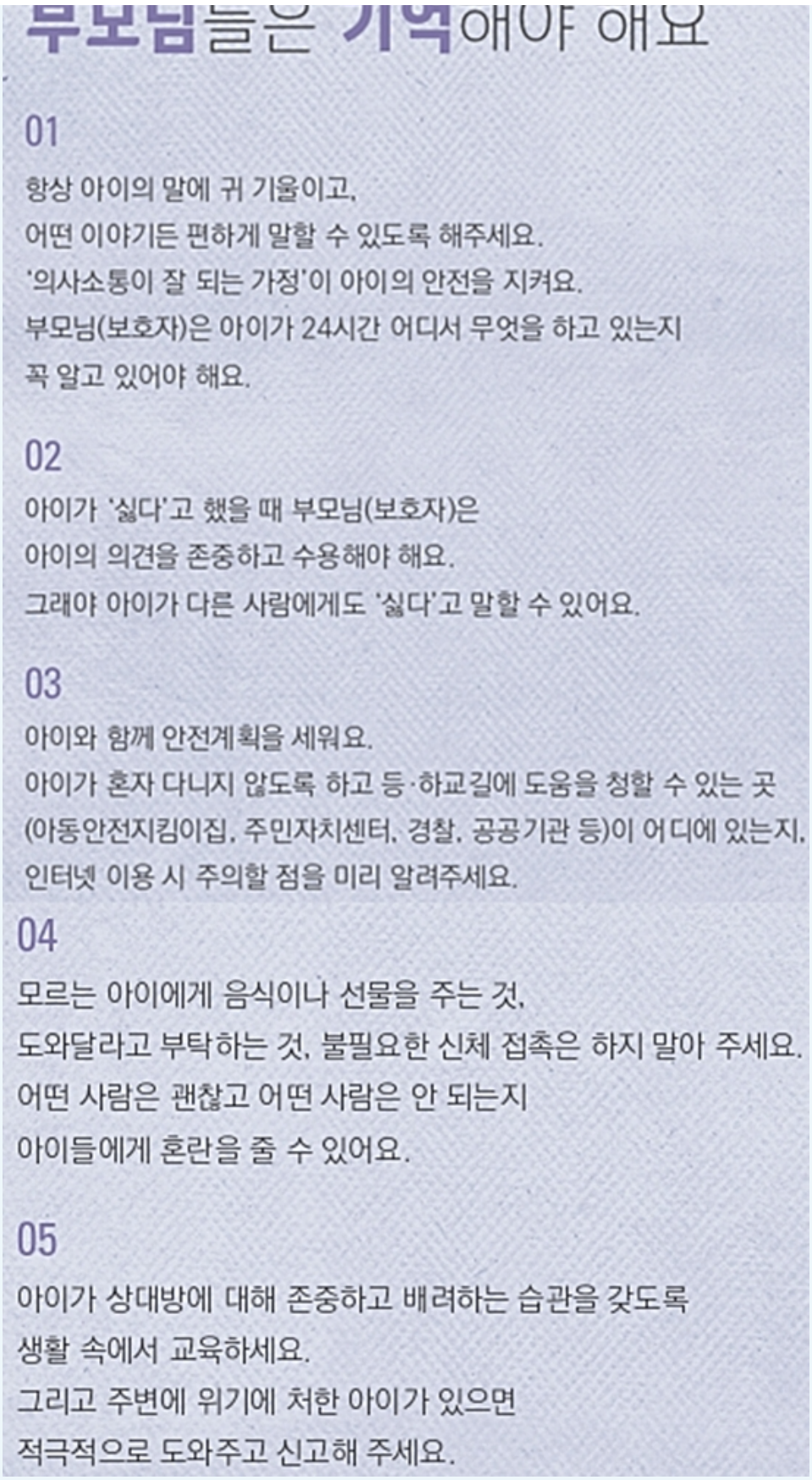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후단).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방법






<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대응매뉴얼, p22~23 >

### 4.1.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함)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전단).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위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후단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

▪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4.2.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 4.2.1.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 기간

▪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취업제한 기관

▪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유치원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 한함)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청소년 단체로서 ①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에 한함)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질문)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참조).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의 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본문).

▪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단서).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항).

### 정부의 의무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교육부장관 : 학교,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함)

√ 성평등가족부장관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및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시·도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기관은 제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제외)

√ 교육감 :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국제학교,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 확인결과의 공개

▹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

####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4.2.2. 성충동 약물치료

### 성충동 약물치료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함)3.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함)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함)

4. 1.부터 3.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 약물치료명령

▪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 약물치료시기

▪ 약물치료 시기는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약물치료의 집행

▪ 약물치료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무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충동 약물치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